안전은 권리입니다
당신의
안전을
환기하세요
지속적인 환기
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출입금지 표지 설치
OPEN
공공누리
2020-교육홍보-280
※ 안전보건공단(kosha.or.kr) ▷ 안전보건자료실
고용노동부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

'밀폐공간'이란 맨홀, 탱크, 피트, 하수관, 정화조, 침전조 등 **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**를 말합니다.

항 목	준 수 사 항	점검결과 (O/X)	개선 조치사항
밀폐공간 확인 및 사전조치사항	우리 사업장에 어느 곳이 '밀폐공간'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다.		
	밀폐공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. ※ 산소부족, 황화수소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 등		
	밀폐공간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.		
질식예방장비 보유	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.		
	환기팬을 보유하고 있다.		
	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보유하고 있다.		
안전조치사항	밀폐공간 작업 전,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. ※ 적정공기 ① 산 소 : 18.0 ~ 23.5% ② 황화수소 :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(이산화탄소) : 1.5% 미만 ④ 일산화탄소 : 30 ppm미만		
	작업 전과 작업 중에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한다.		
	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결과,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.		
	적정공기가 아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		
작업절차	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.		
	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한다.		
안전한 작업방법 교육	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와 감시인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. ※ 유해가스 측정, 환기설비 가동, 보호구 착용, 사고시 응급조치, 구조요청 절차 등		

점 검 일 20 . . .

점 검 자 사업장명 : 부서명 : 이름 : _____ (서명)